

전주지방법원 2022. 4. 8 선고 2021가단283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3. 18.

판 결 선 고 2022. 4. 8.

주 문

1. 피고가 2017. 5. 25.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9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
협약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2,024,2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고,
나. 별지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19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17. 6.
12. 접수 제46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통기의 말소통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의 채권자인데(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92056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), C가 2017. 5. 25.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, 자신이 부친인 D(2012. 4. 7. 사망)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9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. 이러한 피고와 C 사이의 위 협의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. 다만,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현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부동산 중 2/19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2,024,2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최치봉